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9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2.

발 의 자 : 전용기 · 김문수 · 남인순
김영호 · 박정현 · 박선원
김원이 · 윤종균 · 신정훈
이용선 · 박 정 · 이연희
김남희 · 송옥주 · 한민수
최혁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형사사건의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법관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동일·유사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합의가 지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법원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중과

실 및 책임 능력, 가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사건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며, 위자료 산정 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제81조의6 및 제81조의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심의할 수 있다.

제81조의6의 제목 중 “양형기준의 설정”을 “양형기준과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형을”을 “양형과 위자료를”로, “양형기준을”을 “양형기준과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양형기준을”을 “양형기준과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법관의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가해행위의 위법성
2.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 및 책임 능력
3. 가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

4.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5. 그 밖에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81조의7제1항 본문 중 “존중하여야”를 “존중하고,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존중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양형기준은”을 “양형기준과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형기준을”을 “양형기준 또는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로, “양형의”를 “양형 또는 위자료산정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연구·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연구·심 의할 수 있다.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① 위원회는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 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제81조의6(양형기준과 위자료 산 정 참고자료 등) ① ----- 양형과 위자료를----- -----양 형기준과 위자료 산정 참고자 료를-----.
② · ③ (생략) <u><신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법관의 위자료 산 정 참고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할 수 있다. 1. 가해행위의 위법성 2.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 및 책임 능력

④ 위원회는 <u>양형기준을</u> 공개 하여야 한다.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u>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u> 한다. 다만, <u>양형기준은</u>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u>양형기준을</u>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u>양형의</u>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u>가해자의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u> 4. <u>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u> 5. <u>그 밖에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u> ⑤ -----<u>양형기준과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u>-----.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 ----- <u>존중하고,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존중하여야</u>-----. -----<u>양형기준과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는</u>-----. ② ----<u>양형기준 또는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u>----- --<u>양형 또는 위자료산정의</u>---. ----- ----- -----.
---	---